

特 輯

石油開發

石油開發政策과 支援對策



曹基鳳
(動力資源部・油田開發課長)

I. 石油開發事業의 國民經濟的 意義



현대 산업사회에서 石油를 빼 놓고는 국민경제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石油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가정, 산업, 수송부문의 연료로서는 물론 石油化學工業의 원료로서 그 용도는 이루 다 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石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특히 지난 70년대 두 차례의 石油危機를 겪으면서 석유 한 방울이 곧 피 한방울이라는 절실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983년도 우리 나라의 原油輸入代錢은 약 58 억 달러로서 같은 해 총수출액 242억 달러의 약 24%에 해당된다. 이는 온 국민이 가발수출에서부터 플랜트 수출까지 1년간 퍼땀 흘려 모은 돈의 약 1/4를 고스란히 原油수입대전에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름사정이 한창 팝박하던 70년대 말의 경우, 原油수입대전은 총수출액의 1/3까지 육박했던 적도 있었다. 위의統計值들을 놓고 볼 때, 그간 우리가 非產油國으로서 받아온 고통을 쉬 짐작할만 하다.

둘째,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가 언제 또 다시 재현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石油란 돈이 있어도 못사는 稀貴品目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요즈음 油価가 비교적 안정되어 소요물량 확보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않으나, 최근 이란·이라크戰爭이 장기화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봉쇄될지도 모르는 등 石油 문제에는 항상 위협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확보된 재원이 없어 외국租鑛權者들에게만 의존해 오던 국내대륙봉 개발사업과 코데코·에너지(株), (株)油公등 현재 소수의 기업만이 진출하고 있는 해외유전개발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83. 6. 15 石油事業法을 개정하여 「石油開發基金」을 신설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石油開發基金 운용방안을 수립하면서 石油開發政策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곧 이어 石油開發基金融資基準을 고시하는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석유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을 알아 보기에 앞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석유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II. 石油開發事業 추진현황과 전망

우리 나라의 석유개발사업은 1960년대 말 주변 해역에 대한 「에카페」의 石油부존가능성 조사 결과에 따라 1970년대 초부터 개시되었다. 즉 1966년 「에카페」 제 1 차 조사 결과에 따라 遠日灣 일대에 石油부존 가능성이 높은 제 3기 堆積地層이 약 1,000m 두께로 존재함이 확인되었고, 1969년 제 2 차 조사 결과에 따라 주변 대륙붕에 상당한 규모의 석유매장량이 추정되었으며, 한편 1969년부터 1972년 사이에 美海軍 해양연구소 및 西獨 地質調査所에서 国立地質調査所(現 韓國動力資源研究所)와 합동으로 우리 나라 주변 일부 지역에 대한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지역에 따라 상당한 두께의 堆積地層을 발견함에 따라서, 70년대 초 석유개발사업이 착수되었으며,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石油危機로 석유개발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0년 「海底礦物資源開發法」을 제정, 공포하고 이어서 7개 해저광구를 설정하는 同法시행령을 제정함과 동시에 걸프·쉘·텍사코 및 코암社 등 4개 외국회사에 각각 조광권을 부여하여 大陸棚 석유개발을 추진토록 하였다. 그간 외국조광회사들에 의해 물리탐사 54,275L-km, 시추 11個孔을 실시한 결과 몇차례의 가스徵 및 油徵이 발견되었으나, 아직 경제성 있는油田을 발견치는 못하였으며, 제 4 광구의 일부 및 韓·日共同開發区域(第 5 鐵區 일부 및 7 鐵区)을 제외한 구역의 조광권은 모두 반납되었다.

따라서 7개 광구 중 제 1, 2, 3, 4(일부는 제외), 5(일부), 6 광구는 현재 租礦權者가 없는 실정이므로 정부는 石油開發公社로 하여금 이들 단독광구에 대한 물리탐사를 실시케 하고 앞으로 단독광구 개발을 희망해 오는 외국 회사들이 나타날 경우 적극 유치하여 石油開發公社과 공동으로 시추탐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韓·日共同開發区域은 기존 계약에 따라 계속 탐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義務孔(7개공) 시추는 年次의 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다행히도 요즈음 물리탐사자료에 대한 解析技術이 진보됨에 따라 제 5, 6 광구 등에 대한 전망이 종전보다 나아졌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제 6 광구에서 실시한 물리탐사 자료해석 결과 石油賦存 가능성이 높은 몇개의 유망구조가 발견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외국회사들을 유치하여 石油開發公社와 50:50 합작투자로 공동개발토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내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国内大陸棚 개발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民間主導型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외유전개발 사업으로는 1981년 코데코에너지(株)가 인도네시아 西馬六甲 해역에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와의 生產分配方式에 의한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도네시아 国營石油公社에 의하여 상업성 있는油田으로 공식 확인(84. 7. 27)됨에 따라 韓·印尼 양측이 합의한 앞으로의 개발계획대로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株)油公도 美國 헌트社가 개발중인 北에멘 마리브陸上鐵區에 持分參與하여, 그동안 시추탐사를 실시한 결과 石油 및 가스가 발견되는 등 그 결과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해외유전개발사업이 하나·둘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석유개발사업은 새로운 轉期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상에서 개관한 국내외油田開發事業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1. 韓·日大陸棚 공동개발

해양석유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國家間·海洋境界·礦業權·환경문제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지나 海에서의 韓·日間의 대륙붕 경계 문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70년대에 양국간의 주요쟁점이 되었다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양국 정부 대표에 의하여 韓·日大陸棚 공동개발협정이 서명되었으며, 1978년 6월 22일 협정비준서가 교환됨에 따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 協定의 발효에 따라 1979년 10월 30일 西獨 프라크라社의 探查船 프로스펙트号로 제 5, 7 소구역에서의 정밀탐사가 착수된 이래 韓·日 공동구역에서의 석유개발사업은 그간 물리탐사 19,571km, 시추 4개공을 실시하여 약간의 가스와 油徵을 발견하기까지 하였으나, 경제성 있는油田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1987년도까지 韩·日 양측의 조광권자들에게 부여된 試鑿義務孔數는 총 11개공으로서 이미 시추한 4개공을 제외하고도 7개공이 남아있는 바, 앞으로 이들에 대한 시추가 진행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石油부존여부가 차츰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第4鉱区 개발

제4광구는 우리나라 單獨管割 해저광구중 石油부존이 유망한 지역으로서 美国의 자페스社가 1980년 6월 租鉱協約 및 共同運營協約을 작성하여 韓國石油開發公社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제의에 따라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981년 8월에는 石油開發公社과 자페스社間에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광구개발은 石油開發公社과 자페스간의 50:50의 持分参与에 의한 공동개발로 국내인이 대륙붕개발에 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석유생산시 租鉱料率이 他鉱区보다 높아(石油販賣價의 12.5%를 20%로) 석유발견시 우리나라에 많은 收益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탐사초기 단계에 실시되는 물리탐사 및 시추 1개공의 비용은 외국회사인 자페스社가 全額 부담키로 되어 있어 石油未發見에 따른 위험부담이 탐사초기단계엔 거의 없다. 그간 622km²의 물리탐사와 1개공의 탐사시추를 실시하였으나, 油徵을 발견치 못하였다.

3. 단독광구개발

정부는 단독광구인 제1, 2, 3, 4(일부는 제외), 5(일부), 6광구는 현재 조광권자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勳資(研)의 기술지원을 받아 석유개발공사를 개발주체로 하여 기존탐사자료의 재정비와 함께 83년 초에는 유개공 단독으로 6-1광구에 대한 물리탐사 2,838km²를 실시하는 등 유망구조를 확인하여 외국석유회사를 적극 유치, 유개공과 50:50 비율로 공동개발 추진토록 장기적으로는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 독자적으로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4.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油田개발

정부는 우리나라 주변대륙붕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내 소요물량을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유전개발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인도네시아 国營石油公社(PERTAMINA)는 1980년 8월 우리나라 기업에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해역의 油田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도네시아油田 공동개발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개발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간 교섭을 통해 양국정부 대표가 합

意議政書에 서명, 교환하게 되었으며, 1981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의 페르타미나와 우리나라 코데코에너지(株)间에 양측이 각각 50%씩 참여하는 공동개발방식의 生產分配契約을 체결하고, 이어 本鉱区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그간 코데코에너지(株)가 페르타미나와 계약내용에 따라 西마두라해역에서 4개공의 탐사시추를 실시한 결과 2개공에서 각각 石油 및 가스를 발견하였고, 이어서 이 지역에 6개공의 評価井시추를 실시하는 한편, 유전지역에 대한 장기생산시험 결과 인도네시아 国營石油公社인 페르타미나로부터 상업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長期生產試驗時 부수적으로 생산된 양질의 原油 428千Bbl이 지난 8월 27일 麗水港에 입항됨에 따라 최초로 우리 자본과 기술진이 개발성공한 原油를 국내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데코에너지(株)는 금년중 油田지역에 21.8百万달러의 자금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을 설치 완료하면 85년 2~3월頃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착수하게 될 것이며, 가스田지역은 226百万달러를 투자하여 가스생산판매를 위한 플랫폼건설, 파이프라인敷設등 생산시설을 추진하여 87년초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바, 생산된 가스중 Lean Gas(메탄+에탄)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인근 공업단지에 공급토록 하고, LPG는 全量 우리 나라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한 물리탐사와 시추검사를 계속 할 방침이다.

5. 北예멘 마리브油田개발

美國 헌트社가 개발하고 있는 北예멘 마리브 陸上鑛区에 (株)油公, 三煥, 現代, 油開公이 금년초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24.5%의 持分参与를 하고 있는 바, 이 지역 시추결과 石油 및 가스가 발견됨에 따라 생산능력시험을 거쳐 評価井을 시추중에 있어 경제성 있는油田으로 최종판단되는데로 본격적인 개발생산 준비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6. 기타鉱区

大新石油(株)가 美国의 라미社와 75:25 비율의 합작투자로 美国陸上油田(오클라호마·캔ساس·루이지애나)을 개발키로 하고 現地法人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럭키金星은 美債券社가

개발중인 인도네시아 아당鉱区에 25% 持分参与하여 오는 10월경부터 탐사시추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그외에도 三星은 말레이지아 사라와크 7A鉱区 확보를 위하여 82년부터 끈질기게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III. 石油開發政策의 기본방향과 支援対策

석유개발사업은 자금소요가 막대하고, 위험부담이 높으며, 투자의 懷姪期間이 長期이기 때문에 소기업체는 이 사업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국영석유회사를 설립, 혹은 국策事業으로, 혹은 적극적인 支援政策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토대로 우리 나라 석유개발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政策目標

첫째：石油資源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供給源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油類消費量을 감안할 때 石油輸入국인 우리 나라로서는 석유소비량을 해마다 줄여 나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석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91년에 가서는 최소한 국내 消費油類의 10%를 개발된 石油로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民間主導型으로 자주적 석유개발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1980년대에 와서 정부는 그간의 政府主導型 경제체제를 점차 民間主導型 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것임을闡明하였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의 석유개발사업을 現段階에서 全的으로 민간부문에 맡길 수는 없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석유개발사업도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운용방식에 발맞추어 점차 民間主導型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째：국내외 石油開發을 위한 基金의 확보와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석유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투자여력이 없는 국내기업들을 석유개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石油開發基金을 확보, 투자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金融稅制上의 효율적인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政策의 기본방향

위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기본시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1) 國內 大陸棚개발

첫째：물리탐사자료의 연구조사를 통한 자주적인 탐사기반 구축을 위하여 石油開發公社가 動力資源研究所의 기술지원을 받아 자주적으로 물리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시추단계에서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외국 석유회사를 유치하여 石油開發公社와 50:50 비율로 공동개발토록 하되 외국회사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국내 대륙붕 개발의 참여조건을 現行法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국내 대륙붕 개발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民間主導型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기존개발구역인 제4광구(일부) 및 韓·日 공동구역에 대하여는 租鉱契約條件에 따른 사업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諸般與件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2) 海外油田개발

해외油田개발사업의 추진방향으로는

첫째：국내기업의 국제화를 꾀하고 외국회사와의 資源 및 經濟紐帶 강화를 통한 자율적 경쟁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사업추진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民間主導型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둘째：국내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參与持分(15~51%)을 제한토록 유도하는 한편 국내기업간의 콘소시엄方式에 의한 진출을 권장하고

세째：해외개발原油의 국내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実需要者인 精油業체를 국내 콘소시엄 구성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西마두라 유전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인도네시아側과 계약조건에 따라 생산시설과 병행하여 후기 탐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되, 石油開發基金 범위내에서 鉱区반환문제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다른 지

역의 신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최근 油価안정 등으로 세계의 석유개발사업이 저조한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의 鉱区入札(Bidding) 및 개발증인 광구의 持分参与(Farm-In)에 적극적으로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3) 国内大露봉 單獨鉱区와 해외유전개발 사업의 調和推進

석유개발정책표인 石油資源의 자주적 안정공급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국내대露봉 單獨鉱区 개발과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조화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해외유전개발 진출을 통한 기술축적을 도모하고, 국내 單獨鉱区에 대한 꾸준한 탐사활동을 통하여 유망구조를 발견하는등 外國租鉱權者 유치기반을 마련하여 외국회사를 유치, 공동개발토록 하고 既進出 해외광구에의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 자주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技術과 자본에 의한 石油資源의 자주적 안정공급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4) 技術 및 經驗축적

앞으로 늘어나는 국내외 석유개발사업에 투입될 고급 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하여는

첫째 : 기관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및 기능축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探査資料 解析 및 물리탐사부문은 動力資源研究所의 연구진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고, 시추탐사 및 개발부문은 石油開發公社가 주체가 되어 추진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 : 민간기업은 해외광구에의 持分参与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기술 및 경험축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세째 : 石油開發教育基金 및 기타재원을 활용하여 해외기술研修 및 석유개발현장 훈련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네째 :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建造運營中인 韓國試錐船에 승선증인 외국인 기술자를 점차 우리의 기술인력으로 替換하여 자주적인 석유개발 기술능력 배양에 일익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3. 支援對策

1) 支援의 필요성

석유개발사업은 본래 자금소요가 막대하고 투자의 懷

期期間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률이 그 어느 사업 보다도 높고,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특수성을 지닌 사업인데 비하여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국내 기업의 투자여력이 미흡하고 기술 및 개발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환경(鉱区, 法規, 現地金融等)에 대한 정보마저 미비되어 정책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支援制度의 확립

(1) 石油開發基金의 조성

정부에서는 석유개발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3년 6. 15 石油事業法을 개정하여 石油開發基金을 신설하였는 바, 이 기금은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石油開發 사업진출에 상당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輸入石油 배럴당 10센트씩 징수되는 이 기금은 1990년도에 가면, 164百万달러(1315億원)가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방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석유개발 사업에 비하면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나, 초기 탐사 및 시추단계에 대한 응자 등을 통하여 석유개발사업을 다소 나마 지원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난 해 말 제정고시한 石油開發基金 응자기준을 설명하기로 한다.

① 基金용도는 석유탐사 및 시추에 소요되는 자금의 응자와 石油생산을 위한 借入金의 채무보증, 石油開發公社의 운영비 보조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석유생산단계에 대한 借入金의 채무보증은 基金의 조성규모를 감안하여, 80년대 중반까지 당분간 유보토록 하였다.

② 응자대상은 大韓民國國民 및 石油開發公社가 석유자원의 탐사 및 시추사업 결과, 생산석유에 대하여 持分比率에 상응하는 물량을 확보 처분할 수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直接探査費(지질조사비, 물리탐사비, 탐사시추 및 평가시추비)로 한정하였고, 진출대상국의 국내법상 原油수출이 금지된 사업은 응자대상에서 제외 토록 하였으며,

③ 응자방법은 석유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사업의 실패시 元利金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대신 사업의 성공시 기금의 保全을 위하여 이자 및 特別負擔金(로얄티)을 징수하는 成功拂 방식으로 하였고,

④ 응자조건으로는 ④ 融資對象持分한도(국내 사업은 전체持分의 50% 이내, 해외사업은 15%에서 51%

까지)를 설정하여 이 한도내에서만 융자가 가능토록 하였고, ④ 融資比率은 민간기업에 대하여 직접 탐사비의 80%, 石油開發公社에 대하여는 參与持分 全額으로 하였으며, ⑤ 융자기간은 据置期間(正常生產 단계에 달할 때까지로 하되,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포함 18년 이내, ⑥ 이자율은 年利 8%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元金에 가산토록 하였다.

(5) 융자절차는 신청서 접수(매년 6. 1부터 6. 30까지) — 審査 및 결정(신청마감일로부터 90日 이내) — 動力資源部長官의 承認順序로 하며

(6) 심사기준으로는, ⑦ 사업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추진능력, 국내기업간의 콘소시엄에 의한 진출여부, ⑧ 대상광구에 관한 사항으로 予想可採매장량, 인근지역의 成功率, 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조건, 生產原油의 국내반입 가능성, ⑩ 개발여건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국의 정치·경제적인 여건, 현지의 社會間接資本 및 수송조건 등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基金管理機關인 石油開發公社에서 별도로 확정, 운영토록 하였다.

(2) 成功拂 融資制度의 실시

현재 세계적인 석유개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쳐너지역에서의 石油開發成功確率은 3~4%로서 극히 낮은 편이다.

석유개발사업은 고유의 특수성을 지닌 사업인데다가

국내기업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개발경험등이 日淺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西獨·日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成功拂融資方式을 도입하여 석유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稅制支援

세계각국의 石油開發事業 지원시책들은 크게 3 가지로 분류되는 바,

첫째 : 法人稅 등의 감면방식(프랑스, 美國)

둘째 : 特別基金에 의한 융자방식(西獨, 日本)

세째 : 折衷型이 있다.

稅制支援으로는 첫째 : 法人稅法上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損失準備金의 損費算入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둘째 : 損費算入 기간을 연장하며, 세째 : 探鉱準備金의 적립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등 현행 法人稅法上의 제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4) 融資 및 借款에 대한 지불보증

前述한 바와 같이, 장차 試錐成功時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막대할 것으로 해외로부터의 개발자금의 借入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난 해末石油開發基金 융자기준을 제정고시한데 이어 앞으로 이基金의 조성규모를 보아 가면서 石油開發 成功時에 대비한 借入金의 債務保證基準을 제정하는 등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차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国内 唯一의 石油產業 海外弘報誌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84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